

제 5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

제 5.1 조 목 적

이 장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간, 동물 및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무역에 미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, 「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」의 이행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5.2 조 범 위

이 장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.

제 5.3 조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

양 당사국은 「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」에 따른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.

제 5.4 조 분쟁해결

이 장은 제21장(분쟁 해결)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제 5.5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를 설치한다.
2. 이 협정이 발효될 때, 각 당사국은 위원회의 회합을 조정하는 접촉선을 지정한다.
3. 위원회는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「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」의 이행을 증진하고,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 및 협의를 증진하며, 당사국간의 무역에 미치

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4.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위원회 회합에 자국의 관련 정부 당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, 이행 및 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.

5.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관리는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의존하여야 하고, 양자간 협력과 협의를 통하여 최적으로 달성되어짐을 인정하면서, 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 간의 현재 또는 장래의 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. 이러한 목적으로, 위원회는

가. 과학적 위험분석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됨을 인정한다.

나. 각 당사국의 조치 및 그러한 조치에 관련된 규제 절차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,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.

다.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다.

라.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, 국제식품규격위원회, 국제식물보호협약 및 세계동물보건기구와 같은 다자 및 국제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문제에 대한 양자 협의를 증진한다.

마. 기술적, 제도적 협력 프로그램의 고안, 이행 및 검토를 장려하고 조정한다. 그리고

바. 양 당사국 간에 제기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다루는 것에 관한 진전사항을 검토한다.

6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회합한다.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첫 회합에서 위원회의 절차 규칙을 마련한다. 이후,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1년에 한 번 회합한다.